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재 공군의 ‘방공포병’은 주 임무인 미사일방어와 연계성이 낮고, 명칭상의 ‘포병’이 타 군의 특정 병과 명칭을 연상시키는 등 공군 중심의 기능 표현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병과의 핵심 임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역량 및 ‘국가미사일방어’라는 전략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군 ‘방공포병’ 명칭을 ‘미사일방어(Aerospace & Missile Defense)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나. 임용비위 행위자 조치사항, 단기복무장려금 대상에 대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용비위행위를 정의하고, 시험합격·임용취소 심의절차와 임용비위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단기복무부사관의 범위를 단기복무부사관 선발전형에 합격한 사람,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기간 확정된 사람), RNTC로 함.(안제9조의4, 제9조의5, 제60조의32, 제60조의34, 제60조의35)

다. 해군참모총장은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5조(진급권자)에 관한 사항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함에 따라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추천심의 및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등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상 위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군 참모총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범위, 진급 예정 인원(진급 공식), 진급 예정자 명단의 공표 등의 권한행사가 일부 제한 됨.

이에 따라, 진급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안제13조의2, 제13조의3, 제21조, 제22조, 제36조)

라.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범위 확대 및 대통령으로 위임사항을 구체화 마련하는 등 간부 복무 사기 증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제60조의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방공포병과”를 “미사일방어과”로 한다.

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의5(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계급 또는 임용될 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장교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원 중 1명은 법무장교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 중 “참모총장”을 각각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 전단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참모총장에게”를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조종과·항공통제과·방공포병과·정보”를 “조종과·항공통제과·미사일방어과·정보”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군법무관 1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으로 임명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

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 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참모총장은 매년”을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
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매년”으로,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과 해
병대 장교를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군”을 각각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참모총장은 국
방부장관”을 “참모총장(해병대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국방부
장관”으로,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장교의 계급별·병과별 진
급 예정 인원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정하게 할 수 있다”를 “정하
다”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역 후에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1항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4조의4 중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을 “출산휴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포함한다)와 연속되는”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에는”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취업”을 “취업 및 창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내교육과 위탁 교육”을 “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대행하는”을 “위탁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지원 관련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방전직교육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2.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추천할 수 있는 자”는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자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세, 사업자 등록 정보나 그 밖의 취·창업 상태에 관한 자료
2. 주민등록정보, 병무 등에 관한 자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취·창업 관련 교육 및

이수 자료

제60조의3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을 “지급”으로 한다.

- ① 장려금은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후보생 기간 및 임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제60조의34 및 제60조의3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4(장려금 지급 대상) 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임용시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정하며, 임기제부사관은 4년 복무가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1.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중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

제60조의35(군 장려금의 반납 등) ①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고, 반납 금액은 지급액, 복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국방부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임관하지 못한 경우
2.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3. 군 장려금과 법 제62조제1항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장려금의 반납이 곤란하여 반납을 연기할 필요가 있거나,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전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반납을 면제할 필요가 있어 국방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2항단서에 따라 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면제하거나 반납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사유, 반납 금액의 산정 절차, 그 밖에 군 장려금의 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0조의34제1호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단기복무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0조의34제2호 개정규정은 제1호에서 선발된 사람과 동일

한 시기에 임관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제60조의34제3호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임관하여 4년 의무복무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병과) ① 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의2(병과) ①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 제과, <u>방공포병과</u> , 정보과, 군 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 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 찰과 및 인사교육과	3. ----- --- <u>미사일방어과</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9조의4(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 격 등 취소) ① 법 제9조의3제1 항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 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임 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 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 위를 말한다.</u> <u>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 권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 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 는 경우에는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u>

<신 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
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의5(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

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계급 또는 임용될 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장교 중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원 중 1명은 법무장교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先任)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u>참모총장</u>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참모총장</u>이 정한다.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제청심의위원회는 <u>참모총장</u>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초과 여부, 제33조제1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u>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u>-----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u>---.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u>-----
--	---

각 호에 따른 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생략)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급 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급 추천자 외에 따로 선발한 후보자를 진급 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에게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1. 2. (생략)

3. 공군: 조종과 · 항공통제과 · 방공포병과 · 정보과

② (생략)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③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

1. 2. (현행과 같음)

3. --- 조종과 · 항공통제과 · 미사일방어과 · 정보-----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군법무관 1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으로 임명한다.

<삭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①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 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해병대 장교의 선발대상권에 관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건의를 받아 정한다.

③·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장

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 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①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진급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과 해병대 장교를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준장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립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그 진급 예정 인원을 승인할 때에는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①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매년 ----- 정한다.

----- 법 제29조에 따른 -----
----- 법 제29조에 따른 -----
-----.

<삭 제>

② 참모총장(해병대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국방부장

범위에서 계급별·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장교의 계급별·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⑧ (생략)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

관-----
----- 정한다. -----

③·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전역 후에는 임기
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① ---

 --- 참모

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教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생략)

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출산휴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한다)와 연속되는 ---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제1항-----

--- 취업 및 창업-----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사람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

③ -----
----- 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법 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
-----.

④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지원 관련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방전직교육법」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
2.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추천할 수 있는 자”는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예정인 자를 말한다.

⑦ 제4항-----
----- 위탁받은 -----

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 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① 각군의 참모총장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및 군사훈련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

-----.

⑦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세, 사업자등록 정보나 그 밖의 취·창업 상태에 관한 자료
2. 주민등록정보, 병무 등에 관한 자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취·창업 관련 교육 및 이수 자료

제60조의32(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① 장려금은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후보생 기간 및 임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액은 수업료 및 수학보조금(修學補助金)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한도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② -----
----- 지급-----

-----.

제60조의34(장려금 지급 대상) 법 제6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임용시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정하며, 임기제부사관은 4년 복무가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1.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중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

<신 설>

보생과정의 학생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
관

제60조의35(군 장려금의 반납 등)

①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
고, 반납 금액은 지급액, 복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국방부령이 정한 사유에 따
라 임관하지 못한 경우

2.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
우기 전에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3. 군 장려금과 법 제62조제1항
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중
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장
려금의 반납이 곤란하여 반납을
연기할 필요가 있거나, 군 장려
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전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반납을 면제할 필요가 있

어 국방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2항단서에 따라
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면제하거나 반납을 연기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사유, 반납 금액의
산정 절차, 그 밖에 군 장려금의
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
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121